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휴양림 관련 사이트가 산림청 통합 사이트(숲나들e)로 운영됨에 따라 산림청 기본정책과 통일되는 기준을 마련, 효율적인 휴양림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- 나.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관련 조문 정비 등 산림복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숲나들e 정책 기준에 따라 성수기 기간을 변경(안 제3조제3호)
: (당초) 7월~8월 → (변경) 7월 15일~8월 24일
- 나. 배상처리 기한 단축(안 제8조제2항)
: (당초) 5일 이내 → (변경) 3일 이내
- 다. 국가보훈대상자 시설사용료 감면 대상 관련 조문 정비
(안 제6조제3항제5호~제10호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 및
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매년 7. 15. ~ 8. 24.

제4조의2제2항 본문 중 “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”를 “익일 23시 50분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3일”을 “7일”로, “사용예정일 전날까지”를 “예약 후 3시간 이내에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7월 및 8월”을 “제3조제3호제가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9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0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(단, 기상재해는 기상청이 호우·대설·지진·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)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본문 중 “5일”을 “3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실비”를 “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실비”로 한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자연휴양림의 수입금은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할 수 있다.

③시설사용료로 징수한 당일 수입금은 다음 날(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) 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하고,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.

별표 2, 별표 3의 비고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매년 7. 15. ~ 8. 24.

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사용을 예약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감면율(제6조 관련)

대상기간 감면대상	성수기	비수기	감면기준
1. 구미시민 (1인 1실에 한함)	20%	40%	※ 일반사용자의 성수기요금을 기준으로 한 감면율임.
2. 구미시승마장 월회원	30%	60%	
3.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(1가정 1실에 한함)	-	50%	
4.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	-	50%	
5. 국가보훈대상자	-	50%	
※ 비 고			
-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. - 사용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 - 구미시민, 다자녀 할인에 대한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(발급 6개월 미만)를 제시하여야 한다. - 구미시승마장월회원 할인은 사용예정일 기준 월회원일 경우에 적용된다. -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. - 장애인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 정도는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1을 따른다. - 국가보훈대상자는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,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, 「5·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2. (생략) 3. “성수기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하며 “비수기”란 성수기가 아닌 기간을 말한다. 가. 7월, 8월 나. 다. (생략)	제3조(정의)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. 가. 매년 7. 15. ~ 8. 24. 나. 다. (현행과 같음)
제4조의2(시설의 예약) ① (생략) ② 숲속의 집·산림문화휴양관 및 야영데크를 예약한 자는 <u>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</u>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사용예정일 <u>3일 이내에</u> 예약한 자는 <u>사용예정일 전날까지</u>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. ③ ~ ⑤ (생략)	제4조의2(시설의 예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의</u> <u>일 23시 50분까지</u> ----- -----. --- <u>7일</u> ----- <u>예약 후 3시간 이내에</u> ----- 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6조(시설사용료의 감면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시설사용자가 신분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<u>7월 및 8월</u> 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주차장 사용	제6조(시설사용료의 감면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3조제3호제가목</u> ----- -----

료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중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

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

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

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
9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
10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

11. ~ 17. (생략)

제7조(위약금 처리) ① (생략)

-----.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
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
9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0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
11. ~ 17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약금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사용자가 휴양시설을 단축하여 사용할 때에는 미사용 기간분 시설사용료에 대한 위약금 3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.

③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

2. (생략)

제8조(배상처리) ① (생략)

②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시장은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(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)에 환불하여야 한다. 다만,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2조(손해배상 등) ①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, 훼손, 분실한 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

<삭 제>

③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경우(단, 기상재해는 기상청이 호우·대설·지진·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)

2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배상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---- 3일 -----

-----.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손해배상 등) ①-----

----- 손실에 상

상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제14조(세입조치)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15조(수입금 입금) 시설사용료
로 징수한 당일 수입금은 다음
날(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
는 그 다음 날) 시 수입금 출납
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
제16조 (생 략)

당한 금액을 실비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세입조치) ① (현행 제목
외의 부분과 같음)

②자연휴양림의 수입금은 자연
휴양림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
에 사용하도록 매년 세출예산으
로 정할 수 있다.

③시설사용료로 징수한 당일 수
입금은 다음 날(금융기관이 휴
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)
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
야 한다.

<삭 제>

제15조 (현행 제16조와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
제21조의5(자연휴양림 입장료 등의 징수) ①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>

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8. 2. 21.>

□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9조의7(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)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(이하 “이용료”라 한다)은 해당 자연휴양림의 조성·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.

② 생략

소 관 부 서		산 립 과
입 안 자	과 장	안 효 덕
	담 당	박 현 아
	담 당 자	김 도 연 (480-5882)